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2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12월 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4.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 개정이유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가 1997년 조정 이후 임금, 유가, 소비자물가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의거 일체 동결되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종사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특히 노조 측에서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 확대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연대하고 있어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래식 화장실(분뇨) 소유자는 저소득층이고 그 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동결하고
-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750ℓ 까지)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100ℓ 당) 1,160원을 1,320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 지난 1997년 수수료가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6년간 17.4%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는 측면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 즉, 노조에서 계속하여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 확대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연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에 대한 인상요인은 있다고 사료되나
- 수수료를 인상시켜 줄 경우 타 수수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 현재 25개 자치구 중 10여 개 구에서 이미 인상을 완료하였고 10여 개 구는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의 구에서는 인상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람.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우리 구 전체 정화조 중 약 60%에 해당하는 1㎥ 이하의 정화조 대부분이 일반주택의 정화조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본요금(750ℓ 까지)의 인상분을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12조제1항 별표2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750ℓ 까지)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를 「1만 7,680원을 1만 8,710원으로」로 수정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별표2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750ℓ 까지) “1만 8,810원”을 “1만 8,710원”으로 수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4
----------	----------

제출년월일 : 2004. 3. 2.

제출자 : 고기판위원회의1인

1. 수정이유

우리 구 전체 정화조 중 약 60%에 해당하는 1㎥ 이하의 정화조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정화조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본요금(750ℓ 까지)의 인상분을 수정함.

2. 주요골자

(안) 제12조제1항 별표2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750ℓ 까지) “1만 8,810원”을 “1만 8,710원”으로 수정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단위:원) <table><tr><th>구분</th><th>부과 기준</th><th>부과 금액</th><th>비 고</th></tr><tr><td>분뇨</td><td>10ℓ 당</td><td>128</td><td></td></tr><tr><td rowspan="4">정 화 조</td><td rowspan="2">기본</td><td>750ℓ 까지</td><td>17,680</td></tr><tr><td>100ℓ 당</td><td>1,160</td></tr><tr><td rowspan="2">야간 할 증</td><td>정화조 청소 요금</td><td>7.0%</td></tr><tr><td>지하 4층 이하</td><td>정화조 청소 요금</td><td>5.0%</td></tr></table>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본	750ℓ 까지	17,680	100ℓ 당	1,160	야간 할 증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별표2] (단위:원) <table><tr><th>구분</th><th>부과 기준</th><th>부과 금액</th><th>비 고</th></tr><tr><td>분뇨</td><td>10ℓ 당</td><td>128</td><td></td></tr><tr><td rowspan="4">정 화 조</td><td rowspan="2">기본</td><td>750ℓ 까지</td><td>18,810</td></tr><tr><td>100ℓ 당</td><td>1,320</td></tr><tr><td rowspan="2">야간 할 증</td><td>정화조 청소 요금</td><td>7.0%</td></tr><tr><td>지하 4층 이하</td><td>정화조 청소 요금</td><td>5.0%</td></tr></table>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본	750ℓ 까지	18,810	100ℓ 당	1,320	야간 할 증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별표2] (단위:원) <table><tr><th>구분</th><th>부과 기준</th><th>부과 금액</th><th>비 고</th></tr><tr><td>분뇨</td><td>10ℓ 당</td><td>128</td><td></td></tr><tr><td rowspan="4">정 화 조</td><td rowspan="2">기본</td><td>750ℓ 까지</td><td>18,710</td></tr><tr><td>100ℓ 당</td><td>1,320</td></tr><tr><td rowspan="2">야간 할 증</td><td>정화조 청소 요금</td><td>7.0%</td></tr><tr><td>지하 4층 이하</td><td>정화조 청소 요금</td><td>5.0%</td></tr></table>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본	750ℓ 까지	18,710	100ℓ 당	1,320	야간 할 증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본	750ℓ 까지	17,680																																																											
		100ℓ 당	1,160																																																											
	야간 할 증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본	750ℓ 까지	18,810																																																											
		100ℓ 당	1,320																																																											
	야간 할 증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0ℓ 당	128																																																												
정 화 조	기본	750ℓ 까지	18,710																																																											
		100ℓ 당	1,320																																																											
	야간 할 증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제출년월일 : 2003. 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 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가 1997년 조정 이후 임금, 유가, 소비자물가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의거 일체 동결되어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종사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 나. 특히 노조 측에서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 확대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연대하고 있어 수료를 재조정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함.

2. 주요골자

- 가. 재래식 화장실(분뇨) 소유자는 저소득층이고 그 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동결하고,
- 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750ℓ 까지)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100ℓ 당) 1,160원을 1,320원으로 조정하여 현장 종사원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원활을 도모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3.11.5. ~ 2003.11.24.)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별표2의 정화조 기본 부과금액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하고 정화조 초과 부과금액 “1,160원”을 “1,320원”으로 한다.

[별표2]

(단위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노		10ℓ 당	126	
정 화 조	기 본		750ℓ 까지	18,810
	초 과		100ℓ 당	1,320
	합 증	야간	정화조 청소요금	7.0%
		지하4층 이하	정화조 청소요금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2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12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별표2]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단위:원)					(단위:원)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분 노		10ℓ 당		128	분 노		10ℓ 당		128	
정화조	기본		750ℓ 까지	17,680	정화조	기본		750ℓ 까지	18,810	
	초과		100ℓ 당	1,160		정화조	초과		100ℓ 당	1,320
	합증	야간	정화조 청소 요금	7.0%			합증	야간	정화조 청소 요금	7.0%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5.0%				합증	지하 4층 이하	정화조 청소 요금

※ (생 략)

※ (현행과 같음)